공 개

의안번호	제 111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3. 4. (제4차)

의결사항

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3. 4.

1. 의결주문

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)가 승인 요청한 별지의 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을 원안대로 승인한다.

2. 제안이유

□ 코스닥시장 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개설

3. 주요골자

□ 회원의 정의에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추가(안 제2조)

□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정의 신설(안 제2조)

□ 코스닥시장 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개설(안 제4조)

□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관련 매매제도 정비(안 제8조, 제9조의2, 제14조, 제23조의3, 제27조의2)

□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대용증권 지정(안 제43조)

□ 기타 조문 정비(안 제2조, 제25조)

4. 참고사항

가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: <별지>

나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: <별첨>

<별지>

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9항제2호 중 “제8조의2제1항”을 “제7조의3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“회원”이란 「회원관리규정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에 따른 증권회원, 지분증권전문회원 및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.

㉑ 이 규정에서 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”이란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

제3장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적용범위) 이 장은 주권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, 외국주식예탁증권, 신주인수권증서, 신주인수권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적용한다.

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상장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

제14조제1항 중 “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”을 “주권,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외국주식예탁증권”을 “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5조의2”로 하고, “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”을 “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”으로 하며, “주권을 기초주권으로”를 “종목을 기초로”로 한다.

제27조의2제1항 본문 중 “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”을 “주권,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시장에 상장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.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첨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 규정에서 "회원"이라 함은 「회원관리규정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권회원 및 지분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.	② 이 규정에서 "회원"이란 「회원관리규정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에 따른 증권회원, 지분증권전문회원 및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.
③ ~ ⑱ (생 략)	③ ~ ⑱ (현행과 같음)
⑲ 이 규정에서 "고속 알고리즘거래"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매매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.	⑲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호의 매매주문시스템을 회원전산센터(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「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」의 회원전산센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(이하 "회원전산센터등"이라 한다)에 설치할 것	2. ----------제7조의3제1항----------
⑳ (생 략)	⑳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	㉑ 이 규정에서 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”이란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말한다.
㉑ (생 략)	㉒ (현행 제21항과 같음)
제4조(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.	제4조(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) ①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8조(적용범위) 이 장은 주권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, 외국주식예탁증권, 신주인수권증서, 신주인수권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적용한다.
제9조의2(공매도호가의 제한) ①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1호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 한다.	제9조의2(공매도호가의 제한) ① ----------. ----------.
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3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나. 상장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
다. ~ 아. (생 략)	다. ~ 아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4조(호가의 가격제한폭) ①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(이하 "상한가"라 한다)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(이하 "하한가"라 한다)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.	제14조(호가의 가격제한폭) ① 주권,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의3(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) ① 거래소는 주권, 외국주식예탁증권의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제18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	제23조의3(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) ① ----------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매로 변경하거나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(이하 "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종목별 매매거래정지) ① (생략)	제25조(종목별 매매거래정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해당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.	② ----- 제1항 및 제25조의2---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----- 종목을 기초로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7조의2(대규모 착오매매의 구제) ①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과 관련하여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매매거래 중 대규모착오매매(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다. 다	제27조의2(대규모 착오매매의 구제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 주권,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만, 시장상황의 급변,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	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3조(대용증권의 종류 등) ① (생략)	제43조(대용증권의 종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.	②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시장에 상장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.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은 제외한다.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자산운용과
연 락 처	02-2100-2664